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

(양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의의원 : 양은숙 의원,

박주용 의원, 김보경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,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및 의원 당선자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의회 의장 및 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의원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2. “교육연수”란 국내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.

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나 외부기관(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)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

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또는 비교 연수

다. 그 밖에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**제3조(책무 등)**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발굴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교육연수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의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일정·방식 등 추진내용 및 운영계획

3.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평가

4. 의회운영·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·조례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방안

5. 그 밖에 의장이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계획의 통지)**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**제6조(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)**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 및 그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그 계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7조(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)**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, 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별지 서식의 개별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증빙서류의 제출)**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 또는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(토요일·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)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연수기관의 참여 또는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

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**참고**

**상위 및 관계법령** 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4.1.9. 타법개정, 2024.5.17. 시행)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」

#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자체·위탁교육,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이나 비교 연수 등에서 교육비, 여비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6조)
- 의원이 개인, 법인 또는 기관·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, 그 교육비, 여비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7조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)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원의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대체로 여비와 교육비 등이 지출될 것으로 보임. 관련하여 예산 지출 시 적용가능한 편성목은 의원국내여비(205-03)과 의원역량개발비(205-07, 205-08) 등이며, 이는 ‘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’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의회비(205)의 범위에 있음.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의안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 ‘의정 공통업무 지원’ 사업 내 해당 항목을 연례적으로 편성해왔음.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시행하더라도 총액한도제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함. 2025년 본예산에서 5,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, 이로 미루어 보아,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 (안 제6조 및 제7조)

작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양 은 숙 (☎ 2048)